

지방재정 예산용어 설명

용어	용어 정의
일반회계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
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
본예산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하여 성립된 당초의 예산
수정예산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예산안이 의결 되기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제도로써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말한다.
성립전 사전 사용예산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 제도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의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예산
회계년도	1. 1 ~ 12. 31.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액에 대한 자체수입인(지방세+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함.
자체수입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이며,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있다.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지 난 년 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세외수입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한다.
경상적 세외 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장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임시적 세외 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용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의존재원	자치단체의 수입중 자체수입 및 세외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함. 즉,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도에서 재정보전금, 중앙부처 및 도에서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등을 말함.
재정보전금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 징수실적, 시·군의 재정사정등에 따라 도에서 시·군에 배분하는 수입
보조금	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소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
예산의 편성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용 어	용어 정의
경상경비	매년 반복적 경비로 단위시설유지관리 또는 조직과 관련되는 시책사업 매년 계속 경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기준경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수혜계층이 넓고 이해관계가 많은 경비 예) 지방의회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 활동 보조금
투자사업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우선순위 설정 운영,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투자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투자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
명시이월비	당해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금액
사고이월비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계약)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금액
계속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이다.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상충용	당해연도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이 어려워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하여 사용하는 금액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원확보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과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
채무부담행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소요경비가 확보되지 않은 해도 당해연도에 우선 사업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익년도 이후(2년이상)에 지불하는 사업 (외상공사)
일시차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에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지난년도 수입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익년도 2월말까지 수입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 즉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년도 수입으로 정한다.
지난년도 지출	지난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이 가능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의 4%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의96%)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전 재원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목적재원 ⇒ 중앙정부에서 우리 군에 교부될 경우 국비가 아닌 군비에 포함됨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지출을 완료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으로 이월금 (명시,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나머지 금액 ⇒일반재원으로 차기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
수입의 확정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접수하는 것 등을 말함. 다만 특정수입을 목표로 했던 세입에서 실제 결함이 생긴 경우는 당해 세출예산의 경비를 절감해야 함.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용 어	용어 정의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전용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을 말함. 단,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음.
예산의 변경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과·소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예산의 이체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간 사이에 직무 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로 폐쇄한다. ※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 12. 31일에 종료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회계연도	회계연도 종료 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미완결 사무를 정리할 수 하도록 2월 말로 한다. 다만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의 납입은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3.10)
결산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 등 예산과 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또한, 1회계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다.
예산집행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수입원인행위, 수입,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채무부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출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책임을 지는 계약체결 기타의 행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